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7
----------	------

발의연월일 : 2024. 6. 27.

발의자 : 신동욱 · 안상훈 · 엄태영

권성동 · 서천호 · 이달희

김승수 · 이철규 · 강승규

김건 · 김상훈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500만원 한도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였고, 2023년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므로 출산 · 양육 장려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없애고, 감면 대상이 되는 출산일 기준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면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려는 것임(안 제36조의5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으로, “1주택”을 “주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으로,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자녀의 출산 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4년 1

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p><u>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u> <u>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